

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

2019. 10. 24

남재현 (국민대학교 경제학과)

0. 목차

- I.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위기
- II. 바람직한 저축은행의 역할
- III. 정부의 지원

I.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위기

1.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
2. 현재 저축은행의 특성
3. 저축은행 관련 최근 환경 변화

서민 및 중소기업 신용공급 역할 위해 설립

- 상호저축은행(상호신용금고)은 1972년 소위 8.3조치에 의한 “사금융양성화 3법”의 제정에 따라 설립되어 외환위기 이전까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
- 국가주도 신용배분 과정에서 은행 접근에 장애를 겪는 한계 고객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, 가계의 3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하는 주된 금융기관으로 투자금융회사(단자회사), 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을 육성
- 외환위기 이전 저축은행의 고객군은 저신용 계층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는 일부 개인 중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계층이었으며 이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 유지
 - 은행의 여신공여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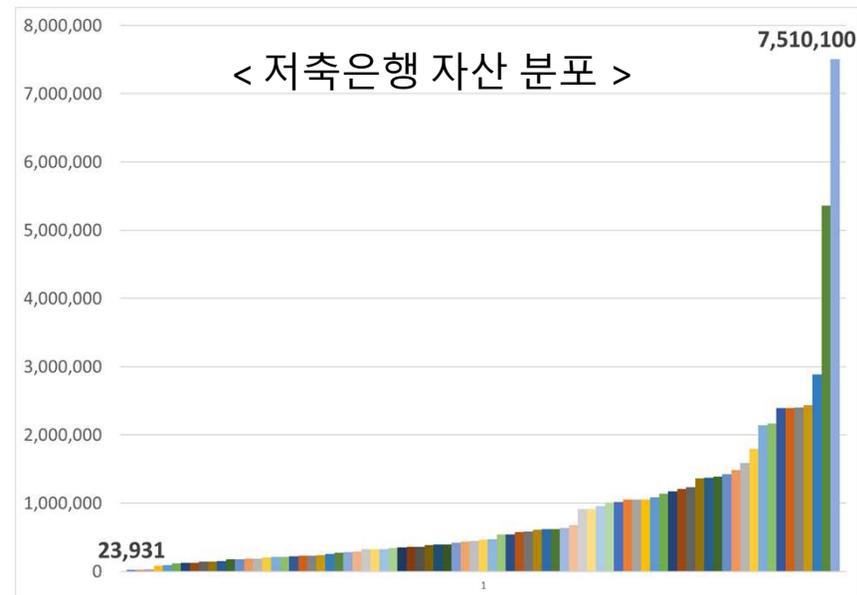
외환위기 이후 전통적 영업기반 사실상 붕괴

- 외환위기 이후 금융업 전반에 걸쳐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비자 금융 시장 본격 진출로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 기반 붕괴
 - 은행은 저렴한 자금동원 능력으로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시장에 적극 진출
 - 신용위험이 낮은 우량고객이 대규모로 은행으로 이전하는 cherry picking 발생
 - 주된 수익 원천이었던 우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실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영업 기반의 상실을 의미
- 영업기반 상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과정에서 소액신용대출, PF대출 등의 영역에서 무리한 영업 전개로 인한 시행착오가 누적되면서 업계 전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에 직면
 - 저축은행의 반복된 부실화는 변화된 영업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취약한 내부통제, 부실한 감독, 부적절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

자산 규모 및 소유 형태 등에서 다양한 저축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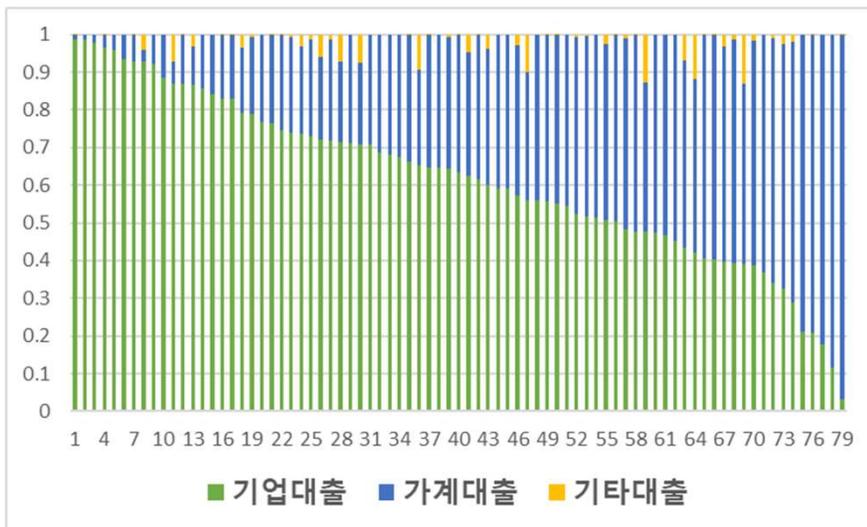
- 현재 저축은행의 다양한 분포

- 자산: 평균 자산은 8,799억, 표준편차는 1조 1,340억원 (2018년말)
 - 최소 자산규모는 239억원, 최대자산 규모는 7조 5,101억원
- 소유: 대부업체(2), 일반기업계(22), 개인계(31), 금융계(24) 존재
 - 대부업체 100%가 서울 소재
- 영업구역: 구역 서울(23), 인천경기(19), 부·산울·산경남(12), 대·구경·북강원(11), 대·천충·청세종(7), 광·주전·라제주(7)의 6개 권역에 분포
 - 복수 영업구역: 5권역(1), 4권역(1), 3권역(4), 2권역(10) – 대부분 서울 포함
 - 자산규모가 큰 저축은행일수록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: 2조 이상 저축은행들은 서울 75%, 수도권 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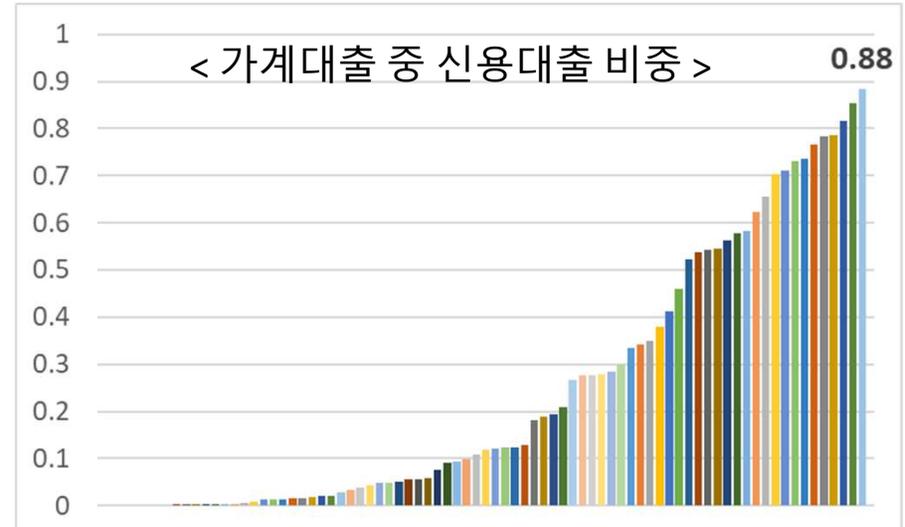


저축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성

- 개별 저축은행 별 대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
 - 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의 비중이 전체대출자산의 10%에 못 미치는 저축은행부터 90%를 넘는 곳까지 다양하게 분포
 -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의 비중도 0%에서부터 88%까지 다양하게 존재
 - 개별 저축은행이 상이한 각자 상황을 근거로 수익모형을 차별화함에 기인



주: 2018년 6월말 기준



주: 2018년 6월말 기준

영업방식에 따른 저축은행 유형과 분화 원인

- 저축은행은 영업방식에 따라 전통적 저축은행, 대부업형 저축은행, 신규사업 모색 저축은행 등으로 유형화 가능
 - 전통적: 영세 소상공인 및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 중심 자산 보유
 - 대부업형: 저신용 개인 대상 고금리 소액신용대출 중심 자산 보유
 - 신규사업 모색: 아파트/공동주택 중도금 대출이나 스탁론 등의 높은 비중
 - 현재 어느 정도 검증된 모형은 전통적 모형 및 대부업형 모형
 - 신규사업 모색 모형은 틈새 시장 또는 규제차익에 기반한 것으로 장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모형임.
- 영업모형 분화(divergence)의 근본원인은 은행에 비해 높은 조달금리
 - 은행에 비해 높은 조달비용(수신금리)은 여신시장에서 시장 분할을 결과
 - 분할된 시장에서 저축은행의 몫은 신용위험이 높은 sub-prime 고객
 - 주된 대출 대상이 개인인지 소상공인인지 여부에 따라 영업 모형 분화

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

- 최근 법정최고금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인하
 - 34.9%에서 2016년 27.9%, 2017년 24%로 인하
- 전반적인 가계부채 급증세 우려와 함께 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 우려가 결합되면서 최근 다양한 가계부채 관련 규제들이 도입됨.
 - 전반적 가계부채 억제 차원에서 업권마다 가계대출의 총량 규제 시행
 - 저축은행: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2018년 상반기 5.1%, 하반기 5.4% 이내로 관리
 -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적립 기준도 전반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
 - 금리 20% 이상 가계대출의 총당금 적립률은 일반대출 대비 50% 가중치 부여
 -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되 고금리대출에 대하여 가중치를 차등 적용
 - 금리 20%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30%로 가중 적용
 - 다만, 정책성 금융상품 및 대출잔액 1천억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은 적용 배제

전반적 경기 악화 및 지역간 경기 격차 심화

- 최근의 경기 하강세와 성장률 저하 경향은 경기순환 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 추세에 있어서 금융권 전반의 하방 위험 요인
 - 지난 9월 통계청은 2017년 9월을 경기 정점으로 공식적으로 선언
 - KDI: 건설 및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2018년 하반기부터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.
 - 인구 고령화 또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하는 요인
 - 또한,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방향이 긍정적인 쪽은 아니라는 것에는 consensus
- 최근 일부 지방에서 조선, 자동차 등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지방 경기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, 서민 등의 상황이 어려워 짐.
 - 이러한 지방경기 침체가 특히 수도권 위주 대형 복수영업구역 저축은행과 지방중소저축은행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

타 업권과의 경쟁 환경 심화

- 인터넷전문은행, P2P 등 새로운 대출취급기관 및 기존의 대부업 및 타 업권과의 경쟁 환경 심화
 - 현재 저축은행은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나 상호금융과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카드, 캐피탈, 대부업 등과 경쟁
 - 인터넷전문은행 활동이 아직은 고신용등급 차입자 등을 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향후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경우 저축은행업권과 경쟁 불가피
 - 이미 신규 신용대출의 금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
 -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, 최근에는 부동산대출 등에 대하여 P2P와의 경쟁도 발생할 여지
 - 나아가 정책당국의 가계대출, 특히 고금리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는 등 저축은행업권에 맞는 생산적 및 포용적 금융으로의 영업변화 요구도 상존

II. 바람직한 저축은행의 역할

1. 저축은행 **Re-Positioning**
2.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
3.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
4. 정책모기지론 판매

국민경제 관점에서 저축은행 Re-Positioning

- 금융환경 및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 인식의 변화에 부합하는 저축은행의 금융시장 내 바람직한 업무영역을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함.
- 개별 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산업 입장에서의 생존 전략의 측면이 아니라, 국가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금융시장 내 저축은행 산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영역을 의미
- 저축은행은 태생부터 은행 접근에 장애를 겪는 한계 고객에 대한 신용 공급이 본래의 역할이었음.
- 저축은행은 1972년 "사금융양성화 3법"의 제정에 따라 설립되어 외환 위기 이전까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

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업무영역: 은행과 관계

-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업무영역은 대표적인 예금수취기관인 은행과 경쟁하기보다는 은행이 향후에도 진출하기 힘들거나 은행만으로는 제대로 상품 공급이 되지 않는 부문을 보완하는 것
- 저축은행의 Re-Positioning은 현재 은행의 역할을 보충(Supplementarity)하거나 추가(Additionalty)하는 시장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함.
- 보충성(Supplementarity):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경우
- 추가성(Additionalty): 정보의 불완전성 해소 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대출 행정비용 등의 거래비용으로 은행이 상품을 공급하기 불가능한 경우
 - 평균 인건비: 은행 9,735만원 vs 저축은행 5,828만원 (2018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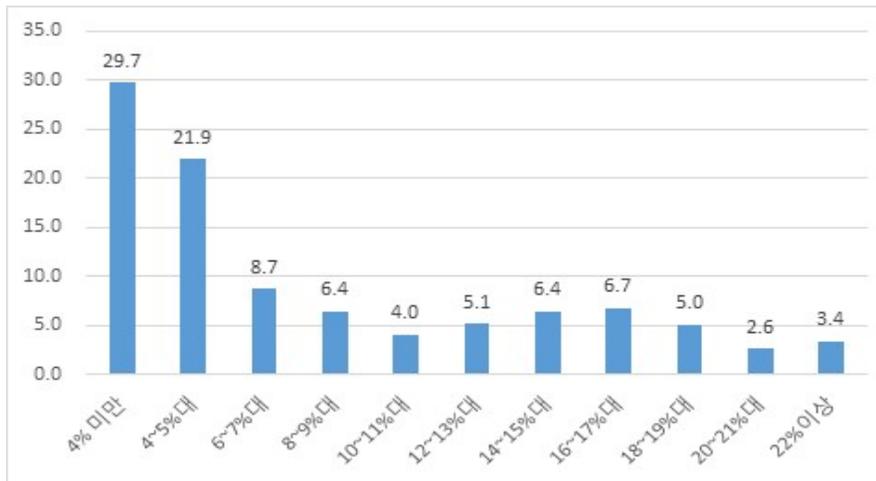
바람직한 저축은행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

- 현 시점에서 저축은행이 은행의 기능에 보충 및 추가할 수 있는 주요 영역으로 다음의 3개 시장을 저축은행의 존재가치로 설정 제안
 -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
 - 소상공인·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
 - 정책 모기지론(보금자리론)
- 정부는 저축은행산업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보다는 은행 등의 역할을 보완하고 기능의 공백을 메우는 자신만의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
 - 또한, 이는 제시된 영역 이외의 업무를 저축은행이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기 영역을 저축은행이 담당할 경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하도록 뒷받침하여 동 시장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

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의 공급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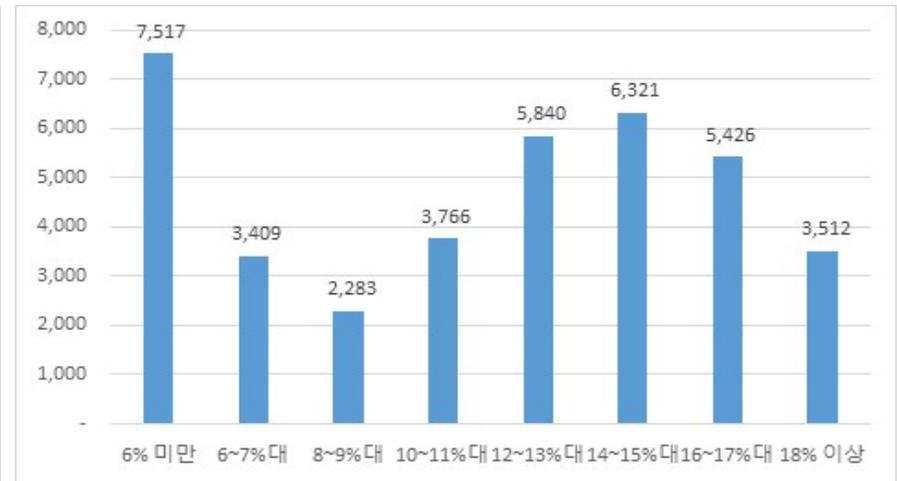
-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
- 특히 6~17%대 중금리 구간 중 10% 이상 구간의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특정업권 집중도가 높은 편임

< 개인신용대출 금리구간별 금액 구성비 >



자료: 신용정보원(2019)

< 중금리대 금리구간별 HHI >



자료: 신용정보원(2019)

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주요 공급자

- 향후 저축은행이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서 은행이 공급하지 않고 있는 10~17%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구간의 주요한 대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
- 은행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금리 단절 현상을 완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.
- 그러나 저축은행은 협소한 대출 수요와 상대적으로 비싼 조달비용으로 상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.
 - 영업구역 제한으로 인해 중금리 대출자 대상의 정교한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더라도 충분한 대출 수요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임.
 - 또한, 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비하여 조달금리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10% 초반대로 낮추기는 매우 힘들.

소상공인 소기업 대출 과소공급 가능성

- 현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보증 비율로 인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보증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하락시키고 대신에 지금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원래의 정책 목적에 부합할 것임.

< 보증 비율별 보증 잔액 >

(단위: 건, 억원, %)

		80%이하	85%	90%	95%	100%
건수	건	338	156,999	22,696	87,887	565,333
	비율	0.04	18.84	2.72	10.55	67.85
금액	억원	259	41,763	9,692	8,440	102,307
	비율	0.2	25.7	6	5.2	6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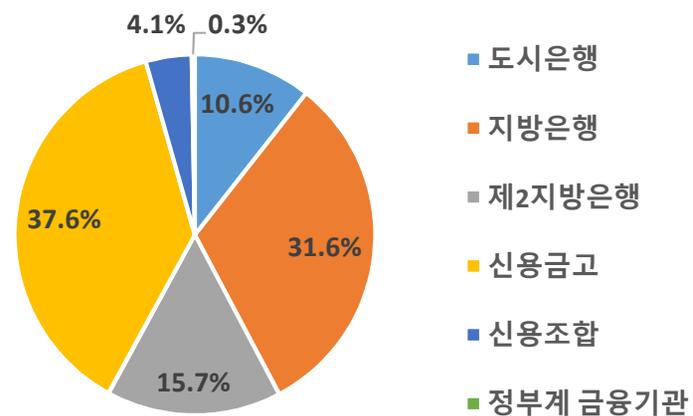
주: 2015년말 기준

자료: 김상환, 김흥기(2016)

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보증 대출 공급

- 향후 서민금융기관이 소상공인·소기업 대상 영업자금 담보대출 시장에서 현재 은행들이 공급하고 있지 못하는 소상공인·소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
- 현재보다 낮은 보증 비율의 보증을 통한 추가적인 보증 공급은 굳이 은행이 지배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보다는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.
 - 일본의 경우에도 시중은행은 보증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, 지방은행 및 서민금융기관들을 통한 보증 대출 공급이 대부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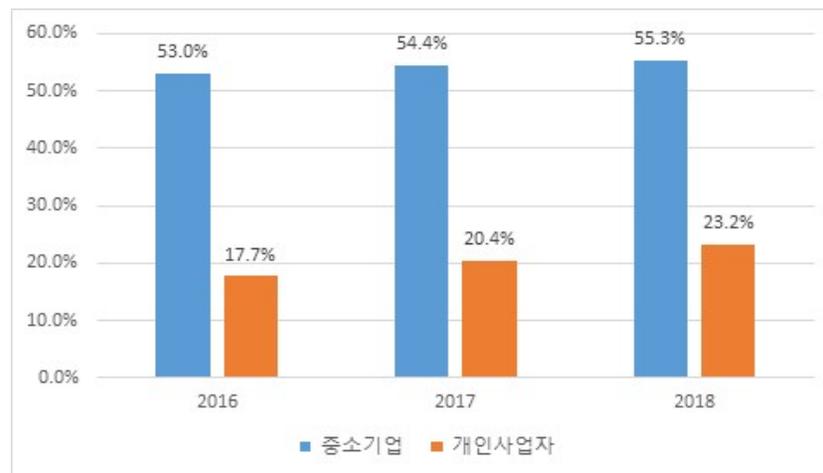
< 일본 보증승인실적 업종별 비중(2018) >



저축은행이 주요 대출 공급자 역할 수행

- 특히, 동 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 중 저축은행이 주요한 대출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함.
- 저축은행이 태동된 이유도 동 시장 즉, 은행 접근에 장애를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신용을 공급하는 주된 금융기관으로 시작됨.
- 이에 동 영역은 전통적인 저축은행의 업무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노하우를 쌓으며 발전해 옴
- 저축은행에서 동 업무 영역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, 최근 들어서는 그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

< 저축은행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>



정책 모기지론의 과소 공급 가능성

- 정책 모기지론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 판매기관인 은행이 보금자리론의 판매에 적극적일 유인이 낮아 경제 전체적으로 보금자리론이 과소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큼.
- 보금자리론의 경우 은행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
 - 이는 점포 접근성 및 금융기관 인지도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타 금융회사보다 은행을 선호하기 때문
- 그러나, 은행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경쟁상품인 자사의 장기모기지론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음
- 이러한 유인 체계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다른 금융기관의 보금자리론 판매 시장 진입 활성화는 경쟁의 촉진을 통해 동 상품이 적합한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임.

저축은행이 정책모기지론 적극적 판매처

- 향후 저축은행이 정책모기지론 상품 판매 영역에서 은행의 역할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판매처 기능을 수행할 필요
- 보금자리론은 요건대출이므로 개별 저축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.
-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소비자들의 은행 선호와 보금자리론 취급 과정에서의 역마진의 문제 등으로 현재는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
 - 저축은행은 점포 접근성 및 금융기관 인지도에서 은행보다 열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행과 달리 u-보금자리론만 취급이 가능한 상황
 - 소비자들은 동일한 보금자리론 상품임에도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은행을 선호함.
 - 일반적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보금자리론을 판매하고 한달 정도 뒤에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재매입하여 구조화하고 있어, 개별 저축은행의 경우 동 기간 역마진 문제로 판매에 소극적인 상황

III. 정부의 지원

1. **Re-Positioning**을 위한 정책적 지원
2. 저축은행 관련 규제의 정비
3. 저축은행 예금보험제도 개선

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영업구역 제한 철폐

- 저축은행이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증대출을 포함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.
- 이는 동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기존 고금리에서 중금리로의 자연적인 금리 하락 노력을 가져올 것
- 정량적인 정보만을 이용하여 대출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 완화에도 해당 지역 신용대출 공급이 줄어들기보다는 핀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금융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큼
-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이 매우 크고, 개인 신용정보의 축적·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기관들은 우수한 개인 신용평가 기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역밀착형 금융의 의미가 크지 않음.
- 특히 핀테크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예상

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저금리 온랜딩

- 정부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저금리 온랜딩을 제공함으로써 사잇돌대출 및 저축은행의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(보증 포함) 확대에 대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
-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금리로 저축은행의 자체 노력만으로 중·저신용등급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10~17% 금리대의 대출 공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힘들.
- 정부는 자체적 노력을 통해 사잇돌대출 및 금융기관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(보증 포함) 증대에 노력하는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온랜딩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저축은행에 참여 유인을 제공할 필요
- 온랜딩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일정 부분을 전환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필요

지신보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 상품 제공

- 저축은행이 소상공인·소기업 대상 영업자금 담보대출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.
-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에 추가하여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 상품을 신설하여 일정 금액의 보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서민금융기관 중 소상공인·소기업 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 유인 제공도 가능
- 보증 비율은 기존의 보증 비율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정책모기지론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

- 저축은행 지점 부족에 따른 소비자 점포 접근성 열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현행 점포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
- 인가기준 비적용 점포 개수를 늘이고, 법규상 미비되어 있는 '달리는 점포 (이동점포)'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는 등
- 또한 정부는 동일한 보금자리론 상품임에도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고객 개인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확인 및 정비할 필요
- 한편, 개별 저축은행들은 자사를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 수요 증진을 위해 t-보금자리론과 아낌e-보금자리론 상품 취급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와의 관련 업무제휴를 요청할 필요
-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과 달리 이해상충 없이 공사의 모기지 상품을 열심히 팔아줄 수 있는 금융업권의 요청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.

저축은행 관련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

- 저축은행산업이 금융산업 전체에서 의미 있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규제 관련 개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
- 전반적인 규제 개선 작업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
- 다만, 서민금융기관들간의 경우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업권 간 규제차익 해소
-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규제는 예금수취기관으로서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비
- 영업행위 규제는 사전 규제를 가능한 사후 규제로 전환하도록 노력
- 저축은행산업 내 규제 차등화를 통한 규제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 추구

저축은행 Re-Positioning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

-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 규제에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제외
 - 다만,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영업구역 내에서 상당부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-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초과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
 -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앞서 제시한 지신보의 추가적인 보증공급 취급 서민금융기관을 영업구역 대출이 우수한 저축은행으로 유도
-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금융기능 강화
 - 중앙회에서 저축은행들의 여유자금(예탁금)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
 - 중앙회 운용 예탁금의 규모가 커지면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산 등과 같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이용하는 자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 - 자산운용 기능 강화를 통해 보금자리론에 대한 한시적 브릿지론 제공도 가능

진입: 동일 대주주 다수 저축은행 소유·지배 규제 현실화

- 기존 저축은행 대주주의 다수 저축은행 인수는 현재 원칙적 불허
 - 그러나 저축은행 그룹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,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감독 상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음.
- 기본적으로 기존 저축은행 간 선의의 인수·합병을 장려하되 규제완화가 악용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
 -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인수는 대주주 적격 심사 또는 건전성 심사가 충족되면 허용할 것을 제안함
 - 다만, 기존에 보유하지 않던 영업구역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하는 영업구역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.
 -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직접공여와 교차공여 현재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, 동일인 신용공여 우려도 저축은행 그룹 차원에서 한도를 적용하여 억제 가능
 - 동일 대주주의 기존 보유 저축은행 또는 피인수 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조건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시킬 수 있음

퇴출: 저축은행 가업승계 인정

- 현재는 상속세율이 높아 대주주의 가업승계를 통한 직계비속으로의 소유구조 변경이 어려운 상황
- 가업 승계나 인수할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강제 해산하게 되면, 지역 내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빠르게 회수되고 결국 지방경제에 부정적인 충격
 - 관계형금융의 특성 상 시장에서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오너가 바뀌게 되더라도 대출영업의 영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.
-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영속적인 영업을 보장하여 지역 내 금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
- 조세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,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적용되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줄 필요
 - 다만, 저축은행은 예금수취기관으로서 일반 중소기업과는 달리 자산의 대부분이 예금자로부터의 부채임을 감안하여 저축은행 지배구조가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는 있음

저축은행 고객접근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

-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일률적 규제방식 개선
 - 수신상품, 이미지, 대출상품 광고를 허용하되 이미지 및 대출상품 광고는 과장광고로 연결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
- 관계형금융을 위한 지점 등 설치에 관한 규제 개선
 - 단기적으로는 '달리는 점포(이동식 점포)' 설치 및 운영을 우선 허용하고, 장기적으로는 지점과 점포 설립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
- 거래자가 저축은행으로 이체거래시 '상호저축', '상호저축은행'이 아닌 거래 개별 저축은행명 표시될 필요

기타 규제 합리화

- 저축은행 공시 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배제 개선
 - 저축은행도 소송촉진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
- 기타 영업규제 개선
 - 외부감사 규제 현실화
 -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합리화
 - 대출 규제 현실화
- 건전성 관련 규제 개선
 - 스타트업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신설
 - 은행과 컨소시엄 PF대출 시 자기자본 조달요건 완화
 - 정상거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분류 현실화
 - 가치분 진행 중인 거래처의 건전성 분류기준 현실화

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성

- 30여개 저축은행의 파산위기를 직면한 저축은행사태의 수습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을 통한 부보금융기관 부담으로 해결토록 하여 저축은행이 과도한 예금보험료 부담 중: 특별보험료 0.1%에 예금보험료 0.4%
- 금융권 부담분 결정시 손실규모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인과 책임만을 고려
- 과거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상환 시와 달리 저축은행 부실의 경우 시스템위기와 같이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 하에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과도한 부담을 간과
- 한 업권의 과도한 부담이 금융업권의 수익성을 약화시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무시

해외 서민금융기관 구조 조정 사례

- 이미 저축은행과 유사한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에 부합하는 분담규모 결정
- 미국의 경우 S&L 구조조정에 따른 총비용 1,529억달러 중 81%인 1,238억달러를 공공부분이 부담하고 민간은 19.0%인 291억달러만 부담
- 스페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경우 전체 990억유로의 FROB를 조성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공적자금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 부담 경감
 - FROB는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과 유럽안정화기구(ESM)으로부터 스페인 정부의 상환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구조조정에 활용
- 일본의 경우 경영악화에 대한 배려와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금융구조조정 시 인상했던 예금보험료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

저축은행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

- 단기: 특별보험료 인하 및 경기완충적 예금보험제도 도입
 - 특별보험료는 상환기간을 2026년으로 고정시키고 0.05%로 인하 검토
 - 2018년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 재계산 결과 금융권의 분담잔액은 5.8조원으로 당초 예상 9.5~10.6조원을 크게 하회
 -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
 - 경기완충적 자기자본과 유사하게 이동평균에 의한 예금보험료 부과 및 경기악화 시 예금보험료 경감 등 경기완충적 예금보험료율 제도를 도입
- 중장기: 동일 성격의 부보금융기관간 계정 통합
 -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동일 성격 부보금융기관간 계정 통합 움직임
 - 미국이 S&L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S&L 예금보험계정과 은행 예금보험계정을 통합하여 운영. 스페인과 폴란드 등 유럽국가들도 금융위기 이후 분리되어 있던 예금보험계정을 하나로 통합
 - 차등보험료율제도로 계정 통합에도 과다 위험 추구 행위 통제 가능

THANK YOU
